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병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59

발의연월일: 2025. 4. 8.

발 의 자:민병덕·위성곤·권칠승

윤후덕 · 김원이 · 한준호

박희승 • 한창민 • 김한규

김남희 • 이수진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

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국가유공단체가 설립·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 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훈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 고 있음.

그러나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·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 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현재 전무한 실정임.

이에 6·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6·3항쟁사망자·부상자·공로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1항제13 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 신설).
- 나. 6·3항쟁부상자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교육지원·취업지원·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함(안 제22조, 제29조 및 제38조).
- 다. 6·3항쟁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고자 함(안 제42조, 제43조의2 및 제44조).

## 법률 제 호

#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에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3의2. 6·3항쟁사망자: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하여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6·3항쟁(이하 "6·3항쟁"이라 한다)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
- 13의3. 6·3항쟁부상자: 6·3항쟁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- 13의4. 6·3항쟁공로자: 6·3항쟁에 참가한 사람 중 제13호의2와 제 13호의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 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

제6조의3제1항 전단 중 "제15호"를 "제13호의3ㆍ제15호"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1호 중 "공상공무원"을 "6·3항쟁부상자, 6·3항쟁공로자, 공상공무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"순직공무원"을

각각 "6·3항쟁사망자, 순직공무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"4·19혁명공로자"를 "4·19혁명공로자, 6·3항쟁공로자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공상공무원"을 "6·3항쟁부상자, 공상공무원"으로 한다. 제29조제1항제1호 중 "공상공무원"을 "6·3항쟁부상자, 6·3항쟁공로자, 공상공무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"순직공무원"을 각각 "6·3항쟁사망자, 순직공무원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공상공무원"을 "6·3항쟁사망자, 순직공무원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공상공무원"을 "6·3항쟁사망자, 중심공무원"으로 한다.

제35조 중 "공상공무원"을 "6·3항쟁부상자, 공상공무원"으로 한다. 제38조제1항 중 "공상공무원"을 "6·3항쟁부상자, 공상공무원"으로 한다.

제42조제1항 본문 중 "공상공무원"을 "6·3항쟁부상자, 공상공무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공상공무원"을 "6·3항쟁부상자, 공상공무원"의 원"으로 한다.

제43조의2 중 "공상공무원"을 "6·3항쟁부상자, 공상공무원"으로 한다. 제44조제1항 중 "공상공무원"을 "6·3항쟁부상자, 공상공무원"으로 한다.

제63조 전단 중 "공상공무원"을 "6·3항쟁부상자, 공상공무원"으로 한다.

제66조제1항제1호 중 "공상공무원"을 "6·3항쟁부상자, 공상공무원"으로 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	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	
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	
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	
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	
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	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<u>13의2. 6·3항쟁사망자: 1964년</u>
	6월 3일을 전후하여 한일협정
	을 반대하는 6·3항쟁(이하
	<u>"6·3항쟁"이라 한다)에 참가</u>
	하여 사망한 사람
<u> &lt;신 설&gt;</u>	<u>13의3. 6·3항쟁부상자: 6·3항</u>
	쟁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
	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
	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
	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
	<u>정된 사람</u>
<u>&lt;신 설&gt;</u>	<u>1</u> 3의4. 6·3항쟁공로자: 6·3항
	쟁에 참가한 사람 중 제13호
	의2와 제13호의3에 해당하지
	아니하는 사람으로서 「민주

14. ~ 18. (생략) ② ~ ⑥ (생략)

제6조의3(신체검사) ① 국가보훈 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4호·제 6호·제12호·<u>제15호</u> 및 제17 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 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 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서면심사(書 面審査)로 할 수 있다.

## ② ~ ⑨ (생 략)

- 제22조(교육지원 대상자 등)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(이하 "교육지원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 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

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				
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				
제2호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				
<u> 련자</u>				
14. ~ 18. (현행과 같음)				
② ~ ⑥ (현행과 같음)				
제6조의3(신체검사) ①				
<u>제13호의3·제15호</u>				
② ~ ⑨ (현행과 같음)				
제22조(교육지원 대상자 등) ①				
1				
· ·				

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 19혁명공로자, <u>공상공무원</u>, 특 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

- 2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 명사망자, <u>순직공무원</u> 및 특 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
- 3. (생략)
- 4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, 미성년 제매및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미성년제매
- ② (생 략)
- ③ 교육지원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 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 다.
-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<u>4·</u>
  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

6·3항쟁부상
<u>자, 6·3항쟁공로자, 공상공무</u>
원
<del></del>
2
<u>6 · 3항쟁사망자,</u>
<u>순직공무원</u>
3. (현행과 같음)
4
6·3항쟁사망자,
<u> 순직공무원</u>
<u> </u>
② (현행과 같음)
③
14·
<u> </u>
<u>19혁명공로자, 6·3항쟁공로</u>
ス}

- 2. (생략)
- 3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<u>공상공무원</u>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

## ④ (생략)

- 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(이하 "취업지원 대상자"라 한 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 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 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 19혁명공로자, <u>공상공무원</u>, 특 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
  - 2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
  - 3. (생략)
  - 4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 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

2. (현행과 같음)
3
6·3항쟁부상자,
<u> </u>
④ (현행과 같음)
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①
1
6·3항쟁부상
자, 6·3항쟁공로자, 공상공무
<u>원</u>
2
<u>6 · 3항쟁사망자,</u>
<u> 순직공무원</u>
3. (현행과 같음)
4
<u>6 · 3항쟁사망자,</u>

## 별공로순직자의 자녀

5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

#### ② · ③ (생 략)

제35조(신체검사의 합격기준) 취업지원 대상자인 전상군경, 공상 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 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,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.

제38조(직업훈련) 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 ·19혁명부상자, <u>공상공무원</u>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취업에 필요 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

	<u>순직공무원</u>
5	
	<u>6 · 3항쟁부상자,</u>
	<u> 공상공무원</u>
(2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	5조(신체검사의 합격기준)
_	
_	<u>6 • 3</u>
ਰੋ	<u></u> 항쟁부상자, 공상공무원
_	
_	
_	
_	
-	,
제3	8조(직업훈련) ①
_	
-	<u>6·3항쟁부상자,</u>
7	공 <u>상공무원</u>
_	
_	

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### ②·③ (생 략)

제42조(진료) ① 전상군경, 공상 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하거나 질병(부상을 포함한다.이하이 조에서 같다)에 걸린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[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(이하"보훈병원"이라한다)을 포함한다]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.다만,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② · ③ (생 략)

④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 혁명부상자, <u>공상공무원</u> 및 특 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 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

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42조(진료) ①
<u>6·3항</u>
<u> 쟁부상자, 공상공무원</u>
·
②·③ (현행과 같음) ④
④6·3항쟁부상자, 공
<u> </u>

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있다.

#### ⑤ ~ ⑧ (생 략)

제43조의2(보철구의 지급) 전상군 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<u>공상공무원</u> 및 특별공로상이자 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(補綴 具)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철구를 지급한다.

제44조(의학적 재활 등) ① 국가 보훈부장관은 전상군경, 공상군 경, 4·19혁명부상자, <u>공상공무</u> 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 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 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 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 책을 마련하고, 그 사업을 수행 한다.

② (생 략)

⑤ ~ ⑧ (현행과 같음)
제43조의2(보철구의 지급)
<u>6·3항쟁부상자, 공상공무원</u> -
제44조(의학적 재활 등) ①
<u>6 · 3항쟁</u>
부상자, 공상공무원
② (현행과 같음)

제63조(양로지원) 국가유공자나	제63조(양로지원)
그 유족(자녀는 제외한다)으로	
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	
세 이상의 여성(전상군경, 공상	
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<u>공상공</u>	<u>6 • 3</u> কু
<u>무원</u>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	쟁부상자, 공상공무원
성은 60세 이상, 여성은 55세	
이상을 말한다) 중 부양의무자	
가 없는 자(부양의무자가 있으	
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	
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)	
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	
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	
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	
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	
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	
공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.	
제66조(수송시설의 이용지원) ①	제66조(수송시설의 이용지원) ①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	
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국가・지방자치단체 및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	
의 수송시설(輸送施設) 이용료	
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	
있다	

- 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 명부상자, <u>공상공무원</u> 및 특 별공로상이자
- ·· -----<u>6·3항쟁부상자,</u> <u>공상공무원</u>-----

- 2. (생략)
- ② (생 략)

- 2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